

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건축사는
'22.02.03. 개정·공포된 건축사법에 따라
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.

대한건축사협회는
회원의 권익증진과 건축사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
다양한 실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회원이입 대상

-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대표건축사
(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)
- ※ 재직건축사(소속건축사)와 자격등록한 건축사 중 공공기관 종사자, 공무원, 교수 등은
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(본인 희망시 가입 가능)

회원이입 기한

- 신규 건축사사무소 개설 대표건축사는 개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
- 현재 협회 미가입한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는
'22년 8월 4일 이후 '23년 8월 3일까지 1년 이내 가입

회원이입 신고

-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시도건축사회에 가입 신고 (본 협회는 자동가입 처리)
- ※ 지역건축사회는 회원이 자율적으로 가입 결정

회원이입 절차



회원이입 제출서류

- ① 정회원 신고서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- ③ 반명함판 사진 2매
- ④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
- ⑤ 졸업증명서, 자격증 사본(학력 및 자격 신고시)

※ 서식안내

- ①, ② : 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(홈페이지 상단 협회소개 → 회원가입안내)
- ④ : 관할 시·군·구청 건축과 또는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

정회원 회비

구 분	납부시기(기한)	회비 기준금액
입 회 비	협회 회원 가입시	200만원
정회원(월정)회비	해당월분 매월 말일까지	25,000원/월

※ 시도건축사회 월정회비 별도

회원이입 문의처

건축사회	전화번호	건축사회	전화번호	건축사회	전화번호
서울	02-581-5717	울산	052-274-8836	전북	063-251-6040
부산	051-633-6677	세종	044-862-6636	전남	061-285-7563~4
대구	053-753-8980	경기	031-247-6129	경북	054-859-8170
인천	032-432-3381~4	강원	033-254-2442	경남	055-246-4530
광주	062-521-0025	충북	043-223-3084~6	제주	064-752-3248
대전	042-485-2813~5	충남	041-338-4088		

회원이입 안내

협회 정보관리국 실적관리팀 (02-3415-6851~4)

회비납부 안내

협회 기획총무국 재정팀 (02-3415-6816~9)



회원이입 Q&A

- Q1 협회 의무가입대상 건축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?**
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대표건축사가 가입대상입니다.
2인 이상의 공동대표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대표건축사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Q2 대표건축사가 아닌 재직건축사(소속건축사)도 협회 가입해야 하나요?**
재직건축사(소속건축사)와 자격등록한 건축사 중 공공기관 종사자, 공무원, 교수 등은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Q3 협회 가입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**
금번 개정된 건축사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미가입 건축사는 2023년 8월 3일까지 협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- Q4 정해진 기간내에 협회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**
협회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법 위반으로 국토부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.
- Q5 회원 가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?**
개설한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행정구역상의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시도건축사회에 가입하면 대한건축사협회에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.
- Q6 본협회 및 시도건축사회 이외 지역건축사회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**
아닙니다. 지역건축사회 가입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Q7 지역건축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나요?**
지역건축사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.